

제292회 임시회  
2010. 7. 23.(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7.23.(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10년 7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7. 21,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2)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제3호)

### 3)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삭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 함.

##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전문위원 구명회)

###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 교육과학기술부 기능개편(안)을 근거로 안 제10조에서 제1호를 보완하고, 제8호에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제9호에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호에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25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 하였고,**
-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별표2 내지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에 추가하는 "영어영재교육센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과학 및 정보화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33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 원 도 서 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3
청 원 도 서 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
보 은 도 서 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4
옥 천 도 서 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9-1
영 동 도 서 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3
진 천 도 서 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9-2
괴 산 도 서 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12
증 평 도 서 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764
음 성 도 서 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금 왕 도 서 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3
단 양 도 서 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1

[별표 3]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34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72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36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5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1



[별표 5]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36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

[별표 6]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충주시 호암동 526-1
남부영어체험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1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u>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u></p> <p>2. ~ 7. ( 생 략 )</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lt; 신 설 &gt;</p>	<p>제10조(업무) ----- -----.</p> <p>1. <u>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u></p> <p>2. ~ 7. ( 현행과 같음 )</p> <p>8. <u>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u></p> <p>9. <u>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u></p> <p>10. <u>과학 및 정보화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u></p>
<p>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2. ( 생 략 )</p> <p>3. &lt; 신 설 &gt;</p> <p>4. <u>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u></p>	<p>제25조(업무) ----- -----.</p> <p>1. ~ 2. ( 현행과 같음 )</p> <p>3. <u>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u></p>

관계법령(규) 발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30]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30, 일부개정]

제5조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 &lt;개정 2009.1.30&gt;

##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시·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주시	충주시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청주시	청주시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청주시	청원군
	충청북도보은교육청	보은군	보은군
	충청북도옥천교육청	옥천군	옥천군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영동군	영동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진천군	진천군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청	괴산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북도음성교육청	음성군	음성군
	충청북도단양교육청	단양군	단양군

##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예고 기간 : 2010. 6. 11 ~ 2010. 6. 17
- 제출자 :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
  - 교육과학연구원장 분장 사무 조정 요구

제출분야	제출 의견		반영 여부
	개정안	변경요구	
연구원장에 게 분장하는 사무조정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 학교 지정 운영 및 관리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학교 및 <b>교육실습협력학교</b> 지정 운영	반영